

# 수입 김치 HACCP 의무적용 시행 안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수입식품 HACCP 의무적용\* 제도가 2024년 10월 1일\*\* 부터 모든 해외제조업소 대상으로 적용되어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배추김치만 수입 가능합니다.

\* 의무적용 품목 :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 과정 등을 거친 그대로의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

\*\* 시행 시기 : 2024년 10월 1일

단계	시행일	수입 규모
1단계	'21. 10. 1.	'19년도 수입량 1만톤 이상 업소
2단계	'22. 10. 1.	'20년도 수입량 5천톤 이상 업소
3단계	'23. 10. 1.	'21년도 수입량 1천톤 이상 업소
4단계	'24. 10. 1.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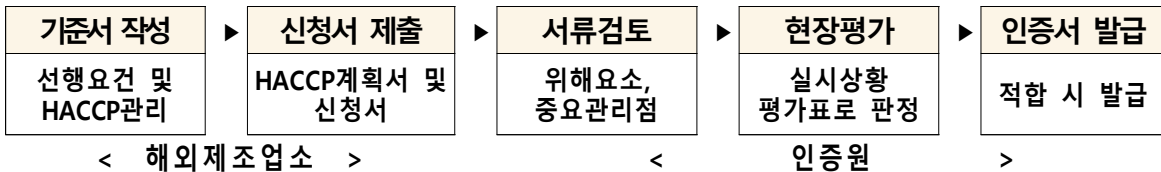
HACCP(해썹)은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전 예방 안전관리체제로 많은 국가에서 식품안전을 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인증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인증 절차 및 신청 방법

○ (인증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인증절차)



○ (신청방법) 전자우편(omkim@haccp.or.kr)으로 신청서 등 서류제출

- 제출서류: 인증신청서(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

※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연락(043-928-0163)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